

압류·수색 등 통지서			
문서번호			발급일자
체납자	성명 (상호)		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
	주소 (사업장)		
제3자	성명 (상호)		생년월일 (사업자등록번호)
	주소 (사업장)		
<p>1.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하고,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거 등을 수색하고 질문하거나 장부,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(근거: 「국세징수법」 제35조, 제36조 및 제48조).</p> <p>2. 세무공무원은 수색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그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사람, 그 가족·동거인이나 사무원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을 참여시켜야 하고, 참여시켜야 할 자가 없거나 참여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성인 2명 이상 또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1명 이상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(근거: 「국세징수법」 제37조).</p> <p>3. 세무공무원은 압류, 수색 및 질문·검사시 강제징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를 제외한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요구하거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(근거: 「국세징수법」 제39조).</p> <p>※ 세무공무원이 집행하는 수색은 조세채권의 자력집행권에 그 근거를 두는 것으로 형사 절차에 적용되는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</p>			
집행 유효기간			
집행 장소			
집행 물건			
집행 이유			
체납내용			
집행자	소속기관	소속부서	성명
세 무 서 장 직인			